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제공일자 2024. 3. 18.

총 3면

www.nec.go.kr

공보과 02)3294-1000 ~ 1006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하세요

= 영내·부대에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
=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해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월 19일(화)부터 23일(토)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신고(신청)기간	신고(신청)방법	접 수
거소투표 신고	3. 19.(화) ~ 3. 23.(토) ※ 서면 제출 시 오후 6시까지	서면(우편, 방문 제출) 인터넷(구·시·군청 홈페이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선상투표 신고		서면(우편, 방문 제출) 선박에 설치된 팩스 인터넷(구·시·군청 홈페이지)	
군인, 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 (영내·부대에 기거하는 경우)		서면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가능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2일(화)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님.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4월 1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3. 거소투표신고서(등록장애인용) 서식 1부.
4. 선상투표신고 안내문 1부.
5. 선상투표신고서 서식 1부.
6. 군인·경찰공무원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문 1부.
7. 군인·경찰공무원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서식 1부.